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國內事件

商標 拒絕查定

〈大法院 第 2 部 判決〉 (1986. 9. 9)

事件番號 : 86 후 1

裁判長 : 이 준 승

關與法官 : 오 성 환 · 이 병 후 · 윤 관

1. 審判請求人(上告人) : 스위스 레브론 소시에테 아노님 (대표 J.H. 베글러)

2. 被審判請求人(被上告人) : 特許廳長

3. 原審決 : 特許廳 1985. 11. 30字, 1984年 抗告審判(絶) 第970號 審決

4. 主 文 : 原審決을 파기하고 事件을 特許廳 抗告審判所에 환송한다.

5. 理 由 :

上告理由를 判斷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出願商標는 英文字로 "Colour와 Scents"라고 표기되고, 商品區分表 第12類에 속하는 향수, 오드클로뉴, 일반화장수, 화장크림, 스킨로우션, 머리카름, 입술연지, 베스파우더, 훈향, 콤팩트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것인 바, 原審決은 그 이유에서, 英文字 Colour는 색, 빛깔을 뜻하며 Scents는 냄새, 향기라는 의미의 복수형이므로 이러한 의미를 지닌 Colour와 Scents를 복합하면 일반적으로 향기로운 빛깔이라는 의미로 풀이될 것이며, 단어를 결합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Colour는 "색, 빛깔"을 뜻하므로 그 지정상품인 향수, 화장크림 등의 형상을 표시하는 것이 되고, Scents는 "냄새, 향기" 등을 뜻하므로 그 商品의 效能이나 品質을 표시하는 것이 되어 이들은 모두 指定商品의 性質表示的인 표장만으로 된 商標라 아니할 수 없으니, 本願商標는 商標法 第8條 第1項 第3號의 規定에 해당되어 登錄받을 수 없다고 判斷하여 그 拒絕查定에 대한 抗告審判請求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商標法 第8條 第1項 第3號에서 그 商品의 產地, 品質, 原材料, 效能, 用度, 數量, 形狀, 價格, 生産方法, 加工方法, 使用方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商標를 登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商品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品質, 效能, 形狀 등만으로 표현한 내용의 商標를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와 같은 商標는 자기의 商品을 다른 商品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는데 그 이유가 있다 할 것 인바(당원 1980. 4. 8 선고 79후 56 판결 참조) 이 사건 出願商標가 原審決이 실시한 바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指定商品들에 대한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그 일반적 공통적인 品質, 效能, 形狀 등이 Colour Scents로 인식되어 있거나 인식될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出願商標를 指定商品의 品質, 形狀, 模樣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商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本願商標가 指定商品의 거래상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原審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拒絕查定이 옳다고 판단한 점에는 商標法 第8條 第1項 第3號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쳐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上告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原審決을 파기하고 事件을 特許廳 抗告審判所에 환송하기로 關與法官의 意見이 一致되어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終>